

강화군 복지재단 지침(발령)

발령번호 제4호

1. 제 명

강화군 복지재단 성희롱·성폭력·스토킹·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

2. 제정이유

- 성희롱·성폭력·스토킹·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적용범위, 정의 (제1조~제3조)
- 이사장, 상급자, 구성원의 책무 (제4조~제6조)
-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(제7조~제9조)
- 예방교육 (제10조)
- 고충상담 신청, 통보 및 신고의무(제11조~제12조)
- 조사, 합의·중재, 조사결과의 보고 등(제13조~제15조)
-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(제16조)
-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·운영 (제17조~제18조)
- 재발방지조치 등 (제22조)

「강화군 복지재단 성희롱·성폭력·스토킹·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」을 발령한다.

2024년 11월 19일

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 윤

